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먼저 제1조는 시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음.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광관련기관·단체 및 업체관계자,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관계공무원의 경우 해당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음.

그러나 위원 구성(참고자료)에서 보듯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위촉 대상이라는 점이 문제로 남게 됨. 왜냐 하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을 위원으로 두는 것은 국가의 관광정책과 시의 관광정책간 연계성 및 보완성을 염두에 둔 경우라 할 것인바, 위촉직이라는 이유로 임기 2년을 고수하게 되면 현재의 관광기획과장이 문화관광부의 타 보직으로 변경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중앙정부와 관광정책의 연계성 내지 보완성 확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위촉직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전반부의 규정을 근거로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5조는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제8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재적 16인, 재석 16인, 전원일치)

8. 소수의견 요지: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관광관련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3.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국 관광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중 “체육센터”를 “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성체육공원

제3조제1항중 “체육센터”를 “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비고1항중 “소인(13세이하)”를 “65세 이상의 자와 소인(13세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재정지원대상)”을 “(재정용자대상)”으로 하고, 동조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재정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안 제8조를 제9조로, 안 제7조를 제8조로,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정보조대상)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

-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2. 재정용자대상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